



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

군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‘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’을 만드는 유니세프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군산시가 동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목적 및 협약기간

- ① 군산시는 전세계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이념과 활동목적에 공감하고,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(Child-Friendly City)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군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협력기간은 협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군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제2조 협력사업

- ① 군산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‘아동친화도시 (Child-Friendly City)’ 프로그램에 동참하여,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통합적 아동 정책을 추진하는 ‘아동친화도시 (Child-Friendly City)’를 조성한다.
- ② 군산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이념에 뜻을 같이하는 ‘유니세프 군산시 후원회’를 군산시민으로 조직하며, ‘유니세프 군산시 후원회’는 군산시와 협의하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.
- ③ 제2조 2항에서 정하는 ‘유니세프 군산시 후원회’는 별도로 명기한 유니세프 후원회칙의 조건에 따라 구성된다.
- ④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군산시가 주관하는 유니세프 관련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.

제3조 대외홍보

- ① 군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외홍보를 할 경우 이를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.
- ② 군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각자 발행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호 이미지와 협력사업 내용을 홍보한다.

제4조 준수사항

군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상호 사업을 존중하며 본 협약에 의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5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

- ① 군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 협약의 만료기간 이전이라도 상호협의하여 본 협약의 조건을 수정, 변경할 수 있다.
- ② 군산시 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협약내용을 변경 또는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제6조 협약의 유권해석

-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상호협의하여 처리하고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령 및 관습에 따른다.
- ② 본 협약 외의 사업에 관한 협조사항은 쌍방이 별도 서면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.

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군산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5년 2월 5일

군산시
시장 문 동 신

문동신

유니세프한국위원회
사무총장 오종남

오종남
2/5/2015 오종남